

#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9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7.

발의자 : 황정아 · 김남근 · 황명선

윤호중 · 조인철 · 박용갑

김성희 · 임광현 · 백승아

최민희 · 서미화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.

그런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한 사항이라 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).



##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

(⑧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·사용하여야 한다.  1. ~ 3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3조(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</u> <u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u> <u>5. ~ 7. (현행과 같음)</u> <u>8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<u>9. (현행 제8항과 같음)</u>
4. (생 략) ⑤ ~ ⑦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
⑧ (생 략)	